

◇개정이유

최근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로 인한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전역 보류를 신청하고 부대에 남아 군 작전을 수행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들의 법적 신분이 명확치 아니한 문제가 있었음.

이에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·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역 보류자의 법적 신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또한, 징계위원회가 징계 및 징계부가금을 의결할 때의 정상참작 사유를 규정하고,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군인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가.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·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전역보류를 신청하는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(제39조제7항 신설).

나. 징계위원회가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의결할 때의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,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제59조의4 신설)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박 근 혜 인

2016년 5월 29일

국무총리 황 교 안

국무위원

한 민 구

국방부장관

●**법률 제14181호**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

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0조의6(군인등에 대한 폭행죄, 협박죄의 특례)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「형법」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
2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
3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
4. 군용에 공하는 함선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군인등에 대한 폭행죄, 협박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군인등의 군인등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「형법」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군형법은 상관, 초병(哨兵)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밖에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「형법」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처벌이 불가능함.

이에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상 군사기지, 군사시설, 군용항공기와 군용에 공하는 함선 내에서 군인등이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·협박을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박 근 혜 인

2016년 5월 29일

국무총리 황 교 안

국무위원 한 민 구
국방부장관

●법률 제14182호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

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7조의2(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) 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.

- 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- 4. 제57조의3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②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